ISSN 1738-0154 / eISSN 2713-6728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엄격성 결정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를 중심으로✣

김동훈* · 박세인**

Ⅰ. 들어가는 말
Ⅱ. 원산지 결정기준
Ⅲ. 이론적 틀
Ⅳ. 경험적 분석
Ⅴ. 나가는 말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소기업,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국문초록|

왜 FTA 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하는 국내적 분배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FTA 협정 당사국 시장의 성격, 특히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진 국가 간의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시장진입비용과 수출집중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FTA의 원산지규정이 엄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FTA가 모든 자국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달리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엄격성으로 인하여 그 혜택은 일부의 국내기업에만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9권 제1호(2024년 여름호).
http://dx.doi.org/10.18031/jip.2024.06.29.1.117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1A3A2A01089543).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주니어 펠로우 (제1저자).

Ⅰ. 들어가는 말

20세기의 무역레짐(trading regime)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중심의 다자주의적 무역 협정이 체결되며 성장하였다.[1]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이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다자주의적 성격과 지역주의적 성격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국제무역관계가 전개되었다.[2] WTO의 비차별 원칙을 대표하는 두 가지 규정인 최혜국 대우조항(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GATT 1조)과 내국민 대우조항(national treatment, GATT 3조)의 예외인 FTA는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차별의 무역레짐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모순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경쟁적인 세계시장에서 체결국 간 상호 관세 및 기타의 무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FTA는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개 이상 존재할 뿐 아니라 거의 매달 한 개씩 체결되고 있다.[3]

FTA는 체결 당사국 간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기업이 협정 당사국을 거치는 우회적 수출·수입(trans-shipment)을 통해 FTA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FTA는 각각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포함하고 있다.[4] FTA의 원산지규정은 협정이 제공하는 특혜를 위해 수출·수입품들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수출·수입품이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

1) Jagdish Bhagwati, *In Defense of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 Jagdish Bhagwati,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비차별 원칙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GATT 협정 24조와 5조를 참조하시오.

3) Mohammad Amin, Filip Jolevski, and Asif M. Islam, "The Resilience of SMEs and Large Firms in the COVID-19 Pandemic: A Decomposition Analysi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The World Bank Group* (October 2023), https://elibrary.worldbank.org/doi/abs/10.1596/1813-9450-10562 (검색일: 2024년 1월 15일).

4) 원산지규정은 그 목적이 제3국 기업의 우회무역을 차단하여 역내무역과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점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의 성격을 가진다.

은 현존하는 FTA들은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FTA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역내 생산품의 기준이 협정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의 엄격성 차이가 존재한다. FTA의 원산지규정은 정부가 국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제시하고 있는 현지조달규정(local content rules)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란 일반적으로 역내에서 제조·변형·생산된 부분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림 1〉은 2004년 이후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을 측정한 것이다.[5]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대부분 물품별·산업별로 다르지만 〈그림 1〉은 전체 산업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6]

<그림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수준

단위: 최대값 7, 산업별 수준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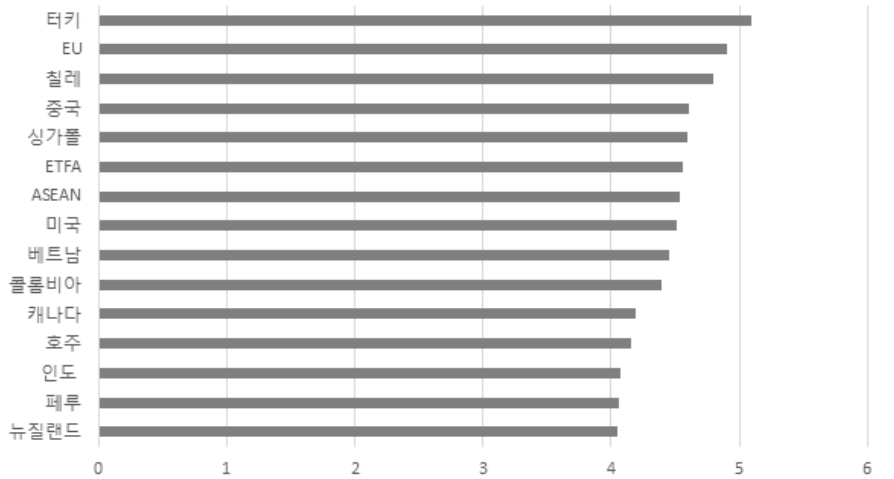

출처: 권미옥·나희랑(2016), p.75.

5) 권미옥·나희랑,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6), pp. 63-107.

6) 한국이 체결한 FTA의 산업별 원산지규정과 그 엄격성 지수에 대해서는 권미옥·나희랑(2016)를 참조하시오.

왜 FTA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7] 원산지규정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공한다. FTA 협정 당사국은 원산지규정의 역내생산의 수준을 낮추어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통한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면 원산지규정의 역내생산의 수준을 높여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할 유인 또한 존재한다. 어떠한 요인이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높이는가? 본 논문은 기존의 설명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 분배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의 엄격함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상대적인 혜택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무역비용(trade cost)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가 다르고, 이는 국가 수준(state-level)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 간 FTA의 엄격성이 높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그리고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으로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 중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270개의 FTA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Ⅱ. 원산지 결정기준

WTO 중심의 다자주의적 무역레짐이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갈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지역주의적 성격을 가진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이 지난 20년간 범람하였다.[8] 일반적으로 PTA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자유무역협정이고, 둘째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초창기 모습처럼 다수의 국가가 역내에서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대외무역정책을 가지는 관세동맹(CU: Custom Union)

7) 권미옥·나희랑(2016)에 의하면 한국의 초창기 FTA의 경우 원산지규정에 대한 학습효과가 없었기에 대부분 보수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채택하였고, 추후 시장이 크거나 선진경제권인 국가와의 FTA의 경우 엄격성이 높아졌다고 추측하였다.

8) Anne O. Krueger, *International Trade: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이다. FTA는 관세동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이 수월하고 국내법 및 제도의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에 대표적인 PTA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무역협정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무역(trans-shipment)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가령 제3국의 기업은 우회무역을 수행하면 추가적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FTA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경제적 이익이 가능하다. FTA 체결국은 이러한 우회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통해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FTA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북미자유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NAFTA의 경우 지난 20년간 원산지규정이 지속해서 엄격해진 사례로서,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역할을 통해 역내무역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가령 자동차 부품의 경우, NAFTA의 원산지규정은 역내에서 생산된 부분(domestic content)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을 초기에는 50%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점차 증가하여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75% 이상으로 강화되었다.[9] 이에 따라 NAFTA 출범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중간재 수입은 많은 부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하였다. 가령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수출 1달러당 미국에서 생산한 중간재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캐나다는 약 0.40달러, 멕시코는 약 0.25달러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10] NAFTA 출범 전 중간재 무역에 있어 중국에 의존적이었던 기업들이 NAFTA의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체결국 간의 역내무역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

9) Bernard Hoekman, and Stefano Inama,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An Agenda for Plurilateral Cooperation?"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2, No.1 (2018), pp. 3-28; 트럼프행정부 시기에 변형된 원산지규정은 NAFTA를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원산지규정을 의미한다. 호크맨과 지딜로(Hoekman and Zedillo)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에 대한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었다. 최근 체결된 원산지규정은 가령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은 원산지규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수준을 85%를 요구했으나 75%로 합의되었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70% 이상이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조립된 자동차가 NA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40% 이상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멕시코의 비교우위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였고, 원산지규정이 자유무역협정의 특정 체결국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 Krueger (2020), p. 217.

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정한 NAFTA의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북미 3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엔진의 수가 연간 50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11]

원산지규정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의미하기에, 과거 물품의 생산공정이 특정 국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시기의 원산지규정은 단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생산의 세계화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하여 최근의 수입·수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로 전락하였다.[12] WTO의 무역협정과 다르게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협정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FTA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13] 더불어 현존하는 대부분의 FTA가 물품별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기에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에서 공표하고 있는 물품별 원산지규정(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약 54,00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14]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FTA를 이용하려는 기업과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원산지규정은 "악몽(nightmare)"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5] 더불어 국제무역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원산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더욱더 애매해질 수밖에 없기에 각 정부의 원산지 결정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그 결정 또한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16]

현존하는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정리할 수 있다.[17]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

11)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USITC),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Economic Impact and Operation* (Washington D.C.: USITC, 2023), pp. 332-592.

12) Olivier Cadot, and Jaime de Melo, "Why OECD Countries Should Reform Rules of Origin,"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23, No. 1 (2008), pp. 77-105.

13) 글로벌 차원에서 원산지규정의 조율을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Hoekman and Inama (2018)를 참조하시오.

14) Dzmitry Kniahin and Jaime De Melo, "A Primer on Rules of Origin as Non-Tariff Barriers,"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Vol. 15, No. 7 (2022), p. 286.

15) USITC (2023).

16) Kniahin and de Melo (2022).

17) 원산지규정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권미옥·나희랑(2016)과 Duy Dinh, Dzmitry Kniahin, Mondher Mimounim, and Xavier Pichot, "Global landscape of rules of origin: Insights from the new comprehensive database," *2019 GTAP Conference Paper* (2019)를 참조하시오.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이는 WTO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를 부과 시 사용되는 것으로,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시 주로 사용된다. 두 번째 형태는 바로 FTA에서 사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논의할 때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FTA의 무역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원산지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FTA의 원산지규정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18] 첫 번째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principle)으로, 이는 특정 물품이 한 국가에서 생산되었을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각각의 FTA의 완전생산품에 대한 정의가 다르나 그 적용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만약 수입된 물품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들로 이루어졌으면 두 번째 기준인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실질변형기준은 최종적으로 수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존하는 FTA은 대부분 품목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입된 물품이 수출국에서 얼마나 변형된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원산지규정이 복잡해지고 주관적인 기술적 문제로 전락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실질변형기준이 FTA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물품의 변형여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첫 번째는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tariff shift method)으로서, 물품의 원재료와 완성품의 국제통상코드(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변경 여부를 따져 원산지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공 정도에 따라 품목코드(세번)가 변경되기에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의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품목코드가 물품의 종류를 얼마나 변형한 것인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고 FTA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실질변형기준의 두 번째 방법은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 test)으로,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역내 즉 FTA 체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만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현존하는 FT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8) 권미옥·나희랑 (2016).

기준으로 현재 대부분의 물품별 원산지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19] 부가가치 기준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현실에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은 모호하기에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품과 원재료의 가격변화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정확한 가격산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의 조작이 가능하므로 많은 무역분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20] 추가로 일부 FTA에서 사용되는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test) 또한 존재한다. 전체 물품별 원산지규정의 약 8% 정도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서,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특정 기술적 작업을 지정하여 해당 작업이 역내에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원산지로 규정하는 방법이다.[21]

왜 이렇게 FTA의 원산지규정은 복잡하고 엄격성의 수준이 다른 것인가? 니아힌과 드멜로(Kniahin and de Melo)[22]와 체이스(Chase)[23]는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통해 원산지규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적고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일수록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비용은 적고 이익은 크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FTA 체결 당사국들의 시장 독과점적 특성이 강할수록 해당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체결된 모든 양자적 FTA(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를 대상으로 가설을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

19) Kniahin and de Melo (2022).

20) 권미옥·나희랑 (2016).

21) Kniahin and de Melo (2022). 본문에서 요약된 기준들의 세부적 적용 방식과 소수의 FTA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Stefano Inama,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를 참조하시오.

22) Kniahin and de Melo (2022).

23) Kerry A. Chase, "Protecting Free Trade: The Political Economy of Rules of Orig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2, No. 3 (2008), pp. 507–530.

Ⅲ. 이론적 틀

1. 선행연구

원산지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및 경제학적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정치학적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24] 그 이유는 원산지규정 자체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원산지규정의 성격 및 기준을 측정하는 데이터 문제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산지규정에 관한 지표(index)를 구축하는 연구, 그리고 해당 지표를 활용하는 연구로서 그 연구의 범위가 한정됐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지표를 발굴하는 토대연구는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 원산지규정이 기업에 의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지를 나타내는 활용률(utilization rate)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러한 지수들을 기반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을 추정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지수는 에스테바데오달(Estevadeordal)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25] 이후 해당 지수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6] 에스테바데오달의 지수는 협정에 명시된 기준들을 분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복잡성을 기반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수준을 7단계

24) Chase (2008).

25) Antoni Estevadeordal,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34. No. 1 (2000), pp. 141-166.

26) 권미옥·나희랑 (2016); 조미진,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85권 (2020), pp. 207-231; 조정란,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 pp. 201-221; Céline Carrère, and Jaime de Melo,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stimates from NAFTA," in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Thierry Verdier (eds.),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91-212; Se-Hyun Park, and Myong-Sop Pak,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 Influence of the Rules of Origin on the Implementation of Perferential Tariffs and Trade Performance," *Journal of Korea Trade,* Vol. 25, No. 8 (2021), pp. 1-24; Alberto Portugal-Perez, "Assessing the Political Economy Factors on Trade Integration: Rules of Origin under NAFTA,"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6, No. 2 (2011), pp. 276-305.

로 측정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300개 이상의 FTA에서 공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유형화와 분석을 통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및 추가적인 지표를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세계무역기구의 산하 기구인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28]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준수비용을 측정하는 연구는 상당수 존재한다.[29] 준수비용은 기업이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간재 조달 및 생산방식을 변경함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원산지규정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원산지규정이 엄격할수록 기업들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크기에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30] 가령 일부 FTA 경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비용이 제품가격의 약 5% 이상으로 측정되고, 이는 FTA의 혜택을 넘는 것으로 기업으로서는 FTA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31] 엔손 외(Anson et al.)에 따르면 NAFTA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이 물품가격의 약 6%에 해당하여, 이는 NAFTA로 인한 약 4% 정도의 관세철폐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한미 FTA의 경우 또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평균적인 준수비용이 약 7% 정도의 관세효과가 있어 NAFTA보다 준수비용이 높을 뿐

27) Estevadeordal (2000).

28) Kniahin and de Melo (2022).

29) 조미진 (2020); Carrère and de Melo (2006); Kazunobu Hayakawa, "Impact of Diagonal Cumulation Rule on FTA Utilization: Evidence from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between Japan and Thailand,"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32 (2014), pp. 1–16; Jan Herin, "Rules of Origin and Differences between Tariff Levels in EFTA and in the EC," *EFTA Occasional Paper*, No. 13 (1986).

30) José Anson,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Jaime de Melo,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3, No. 3 (2005);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Thierry Verdier (eds.),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1) 조미진 (2020); Cadot and de Melo (2008).

32) Anson et al. (2005).

만 아니라 이는 한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효과를 대부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3] 더불어 FTA 원산지규정과 수출·수입량의 분석하는 연구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FTA 활용률은 국가가 정보를 제공해야 측정할 수 있기에 관련된 연구 또한 정보가 공개된 국가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34]

비관세장벽으로서 원산지규정이 무역레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는데, 가령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35]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FTA의 확산에 관한 연구,[36]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 선호에 관한 연구,[37] 원산지 결정기준과 국제통상코드의 조응성에 관한 연구[38] 등 숨겨진 무역장벽으로서 원산지규정이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성격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에 비하여 원산지규정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나, 선행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 및 원산지규정의 정치적 효과가 제시되었다.[39] 가령 카돗 외(Cadot et al.)는 원산지규정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중간재

---

33) 조미진 (2020).

34) 김영춘·성남길·김정숙,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 pp. 23-42;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p. 367-390; Kniahin and de Melo (2022); Miriam Manchin and Annette O. Pelkmans-Balaoing, "Rules of Origin and the Web of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The World Bank Group (August 2007) https://elibrary.worldbank.org/doi/abs/10.1596/1813-9450-4273 (검색일: 2024년 1월 18일); Park and Pak (2021).

35) Bhagwati (2008); Rod Falvey and Geoff Reed,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34 (1998), pp. 209–229; Kala Krishna and Anne O. Krueger,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Alan V. Deardorff, James A. Levinsohn, and Robert 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pp. 149–198; Arvind Panagariya, "The Regionalism Debate: An Overview," *The World Economy*, Vol. 22, No. 4 (1999), pp. 455-476.

36) Choong Yong Ahn, Richard E. Baldwin, and Cheong Inkyo,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Springer, 2005).

37) Masahiro Kawai and Ganeshan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DBI) (April 2009), https://www.adb.org/publications/asian-noodle-bowl-it-serious-business (검색일: 2023년 12월 19일).

38) Cadot et al. (2006).

39) 후프바우어와 굿리치는 국가 간 안보관계가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FTA의 전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친

생산자들에 의한 정치적 로비행위를 분석하였고,[40] 쇼트(Schott)는 미국과 대만의 FTA 협상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미국 생산자들이 중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대만의 FTA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을 의미하고, 따라서 미국-대만 FTA는 미국의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보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생산자들의 로비는 미국-대만 FTA의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41] 더불어 FTA의 원산지규정은 FTA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상쇄하여 국내 정치적으로 FTA가 수용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42] 특히 체이스(Chase)는 제품의 최종생산자들은 해외에서 중간재 및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덜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선호할 수 있으나, 일부는 다른 국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43] 이러한 선행연구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라 원산지규정 엄격성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산업별, FTA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미국-이스라엘 FTA가 미국의 FTA 중 가장 개방적이고 원산지규정도 덜 엄격한 이유가 미국 외교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Gary Hufbauer and Ben Goodrich, "Free Trade Agreements: Lessons from NAFT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pril 2004,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2184454/free-trade-agreements-ch-2/2940431(검색일: 2024년 1월 9일).

40) Cadot et al. (2006).

41) Jeffrey J. Schott (ed.),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p. 220.

42) Rupa Duttagupta and Arvind Panagariya, "Free Trade Areas and Rules of Origin: Economics and Politics," *Economics & Politics,* Vol. 19, No. 2 (2007), pp. 169–190; Gene M. Grossman and Elhanan Helpman, "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4 (1995), pp. 667–690.

43) Chase (2008).

2. 가설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된 두 가지 패턴 (1)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2)기업은 자신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이 다르다는 점에 기반하여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기업 간 선호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선호의 차이는 국가별 FTA 원산지규정에 투사되어 FTA 원산지규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가설로 제시한다.

누구를 위한 원산지규정인가? 원산지규정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특정 물품들에 대한 시장가격의 왜곡 현상을 일으킨다. 가령 기존에 물품(중간재) A를 제3국에서 조달하고 있던 FTA 협정국의 기업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중간재를 역내에서 조달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유인이 발생한다.[44] 그러나 국내의 모든 기업은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이 FTA 당사국의 모든 기업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그 혜택은 일부의 국내기업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기업 간 선호에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을 제시한다.

FTA와 원산지규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적으로 원산지규정의 행정적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바그와티(Bhagwati)는 FTA를 무역레짐 속의 흰개미(termites)로 비유하면서 FTA와 이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범람으로 무역의 거래비용이 증가함을 강조하였는데,[45] 실제 FTA에 포함된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칙(annex)은 대부분 3백 페이지가 넘는 양으로 방대하고 복잡하다.[46] 결과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이 FTA 관세 혜택보다 더 클

44) 원산지규정이 없었다면 해당 기업은 제3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3국의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 FTA의 관세 혜택으로 국내조달이 더 저렴해졌기에, 원산지규정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역내 기업에 무역혜택을 제공하는 무역장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5) Bhagwati (2008).

46) Schott (2004), p. 220.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47][48] 이지수(Yi)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복잡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원산지규정의 행정적 집행 과정의 문제로서, 이는 FTA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49] 수출기업에게 FTA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품이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을 기업이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일반적으로 4천 페이지가 넘으며, 서류 준비에 드는 비용이 약 물품가격의 2%에서 높게는 5%까지 소요된다는 추정도 존재한다.[50] 그리고 원산지규정이 엄격할수록 행정절차는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이 더 드는 효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51] 원산지규정이 FTA마다 다르고 국가별 증명절차가 다르기에 FTA가 늘어날수록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이 제조업의 경우 물품 가격의 약 6%, 자본재는 약 7%, 소비재는 약 9%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일부 기업에는 행정적 거래비용이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52] 국내기업에게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FTA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높은 행정비용으로 일부 국내기업에는 오히려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업은 FTA의 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있고, 이는 FTA의 활용도(utilization)가 실제 그리 높지 않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53] 〈그림 2〉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특혜관세 활

47) 이에 대하여, WTO의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는 각국의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산 지규정의 단순화와 투명화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WT/MIN (15)47 (2015). 원산지규정의 행정적 복잡성에 대해서는 Inama (2009)를 참조하시오.

48) 조미진 (2020).

49) Jisoo Yi, "Rules of origin and the use of free trade agreements: a literature review," *World Customs Journal,* Vol. 9, No.1 (2015), pp. 43-58.

50) 조미진 (2020).

51) Vivian C. Jones and Liana Wong,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L34524* (2020).

52) 조미진 (2020); Park and Pak (2021).

53) Kyle W. Bagwell and Petros C. Mavroidi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 Law and*

용률로서, 한국기업들이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수출은 69.5%, 수입은 74.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2> 한국 FTA의 특혜무역 활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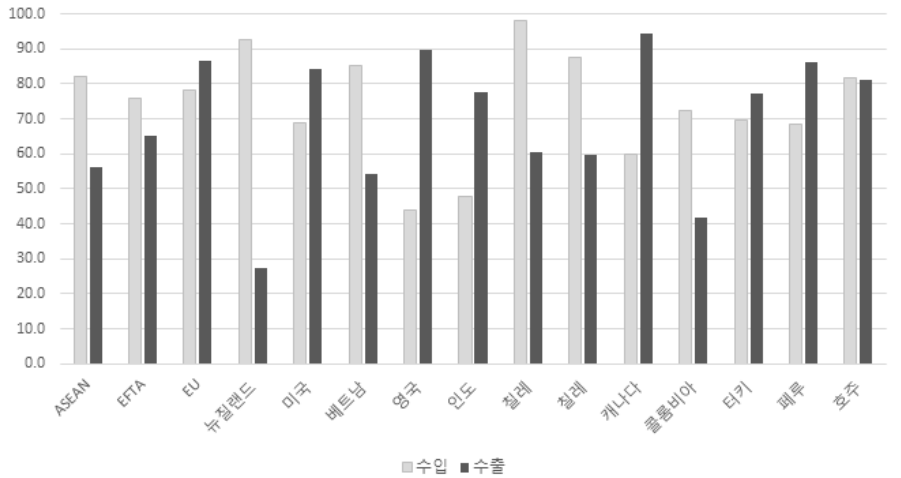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FTA 활용정보,"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UseRate/ftaUseRateCnvnExpList.do?mi=3352 (검색일: 2024년 1월 20일).

그렇다면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어떠한 국내기업에 우호적이고 반대로 배제적인가? 쇼트(Schott)는 FTA와 이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범람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지닌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은 복잡하게 얽힌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무역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54] 유사하게 체이스(Chase)는 중간재 수입이 중요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FTA의 원산지규정을 선호할 수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large firms)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자신의 독과점적 위치를 공고화할 유인이 있음을 제시하였다.[55]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FTA의 관세 혜택을 포기할 유인이 존재한다.[56] 실제 미국 중소기업의

Economics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54) Schott (2004), p. 88.

55) Chase (2008).

56) Jones and Wong (2020), p. 11.

경우, NAFTA 원산지규정의 높은 준수비용으로 인하여 FTA 관세가 아닌 WTO의 일반관세(MFN rate)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7]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평균 일반관세가 2.5%임을 고려한다면 NAFTA의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58] 더불어 최근 일본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또한 기업이 수많은 FTA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하는 행정비용이 고정비용(fixed cost)으로서 약 4%나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59] FTA는 원산지규정을 통해 일부에게는 무역 혜택을 부여하지만, 일부에게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통해 시장접근을 막는 보호주의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60]

최근 니아힌과 드멜로(Kniahin and de Melo)는 기업의 수출 규모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및 준수비용의 관계에 대한 수리적 분석을 통해 엄격성이 높을수록 수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원산지규정을 통해 수출할 유인이 작아짐을 제시하였는데,[61] 이는 수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관대한 원산지규정을 선호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FTA를 통한 무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준수비용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 그리고 수출 규모가 크기에 행정비용에 대한 한계비용이 적은 기업에는 부담이 아니지만, 수출 규모가 적고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FTA는 혜택이고 시장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중소기업에게 원산지규정은 단순한 비용의 증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10명 이상 2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62] 이러한 중소기업은 전체 OECD 국가 고용(employment)의 약

57) Krueger (2020), p. 220.

58) Hoekman and Zedillo (2019), p. 9.

59) Kazunobu Hayakawa et al., *Costs of Utiliz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Tokyo: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19).

60) Kniahin and de Melo (2022), p. 13.

61) Kniahin and de Melo (2022).

62)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orld Trade Report 2016: Leveling the trading field for SM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p. 5.

63%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기에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 기여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낮다.[63]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을 통하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령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 7.6%로 이는 평균적으로 14.1%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64]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적 비중은 높지만, 전체 수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모든 무역장벽이 고정비용의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또한 FTA의 원산지규정과 같은 복잡한 규정과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FTA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5]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품들의 가격이 대기업 수출품에 비해 낮기에 원산지규정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고정비용의 증가에 중소기업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령 100달러짜리 제품에서 고정비용 1달러와 10달러 물품에서 1달러의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결국 중소기업에게는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FTA의 관세혜택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한 국제무역이론과 일관적인 현상으로,[66] 원산지규정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래비용으로 인한 고정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기업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선호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FTA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FTA의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7]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출·수입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FTA

63)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p. 5.

64)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p. 7.

65)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p. 8.

66) Elhanan Helpman and Paul Krugman,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Cambridge: the MIT Press, 1985).

67) Christoph Albert and Lars Nilsson, "To use, or not to use (trade preferences) that is the question," European Trade Study Group (August 2016), p.90, https://www.etsg.org/ETSG2016/Papers/090.pdf (검색일: 2024년 1월 9일).

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대기업이 FTA를 더 많이 활용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68] 더불어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준수비용은 대기업에는 그 영향이 적지만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고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대기업을 위한 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69] 체이스(Chase)는 대기업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의 증가로 새로운 시장진입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우위적 위치를 공고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70]

<표 1>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국내시장구조

		국가 B 대기업 집중도	
		높음	낮음
국가 A 대기업 집중도	높음	(1) 엄격한 원산지규정	(3)
	낮음	(3)	(2) 관대한 원산지규정

출처: 저자 작성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기업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원산지규정의 철폐 또는 관대한 원산지규정을 선호함을 주장한다.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장하였듯이,[71] 규모는 작지만, 숫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규모가 크고 숫자가 적은

68) Katsuhide Takahashi and Shujiro Urata, "On the use of FTAs by Japanese firms: Further evidence," *Business and Politics,* Vol. 12, No. 1 (2010), pp. 1-15; Luca De Benedictis, and Luca Salvatici (eds.), *The trade impact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policies: an analysis through gravity models* (Heidelberg: Springer, 2011).

69)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p. 64.

70) Chase (2008).

71) Fiona McGillivray, *Privileging Industry: The Comparative Politics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대기업에 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로비(lobby)에 있어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어렵고 영향력이 작다는 점에 기반하여 〈표 1〉과 같은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1) FTA를 체결하는 두 국가의 시장구조가 대기업 중심일수록 양국 간 체결된 FTA의 원산지규정은 엄격할 것이고, 반대로 (2) 시장구조가 중소기업 위주인 국가 간의 FTA 원산지규정은 관대할 것이다. 만약 (3)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 시장구조의 성격이 상이할 경우, FTA 협상의 결과에 따라 그 엄격성이 정해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H1: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당사국의 시장구조가 대기업 중심일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높아진다.

Ⅳ. 경험적 분석

1. 변수

FTA의 체결 당사국의 시장구조와 원산지규정 엄격성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다. 종속변수인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양자 간 관세와 제품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이며, 190개국 사이에서 체결된 270개의 FTA를 포함한다. 각 FTA의 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별공정기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요구하는지에 따라 품목별 엄격성 지수(RI: Restrictiveness Index)를 계산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통상 코드 HS6 수준의 산업별 결과를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으로 요약하여 각 FTA 수준으로 집계한 값을 제시하고 있다. 엄격성 지숫값이 0.25 미만이면 낮은 수준의 엄격성, 0.25에서 0.5 사이면 중간 수준의 엄격성, 0.5 초과면 높은 수준의 엄격성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높은 수준의 엄격성에 속하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두고 분석을 진행

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데이터 한계로 인하여 전체 271개의 FTA 중 102개의 FTA가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약 100개 국가의 대기업 집중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대부분 국가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에 자료수집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연구는 대기업 집중도를 대신하여 국가별 시장구조가 얼마나 독과점적인가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사용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국가별 시장진입장벽(entry barriers)을 나타내는 시장진입비용이다. 진입장벽은 잠재적 경쟁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어렵게 하는 법적, 기술적, 또는 비용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독과점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반독점(anti-trust) 및 시장 경쟁성(market competition)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72] 본 연구가 무엇보다도 국가별 시장의 진입장벽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대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73] 대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경우, 대기업에 의한 절대적 비용의 우위(absolute cost advantage)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브랜드(brand) 및 광고(advertising) 효과로 인하여 시장진입비용이 높고 이는 시장에서 대기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74] 물론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경우, 대기업 또한 새로운 산업 및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쉽지 않으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및 풍부한 경험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에 중소기업에 비해 장벽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75] 더불어 소수의 대기업

72) Joe S. Bain, *Barriers to New Competition: The Character and Consequenc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George J. Stigler,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Ron Kemp, Marco Mosselman, Jasper Blees, and Jeroen Maas, "Barriers to Entry," *EIM Business and Policy Research, Scales Research Reports* (2003); 한병영, "시장진입장벽의 발생원인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2), pp. 23-42; 장지상·이근기,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pp. 225-254.

73) 장지상·이근기 (2012); Paolo Buccirossi (ed.), *Handbook of Antitrust Economics*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p. 130.

74) Bain (1956); 한병영 (2012).

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높은 이익률(high profits)이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 새로운 기업진입이 어렵기에 독과점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76] 대리변수로서 시장진입장벽의 측정은 세계개발지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장진입비용(market entry cost)으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로 측정되었다.[77]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은행이 시행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약 190개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78]

본 연구는 가설에서 제시하는 독립변수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험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앞에서 언급된 시장진입장벽이라는 대리변수와 더불어 또 다른 대리변수를 통해 분석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상적으로는 산업의 집중도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업 집중도를 측정하여 경험적 분석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약 100개 이상 국가의 산업별 기업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FTA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수출다변화 및 수출집중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경험적 패턴에 기반하여 수출집중도(export concentration)를 국가별 시장에서의 대기업 집중도를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핀스트라 외(Feenstra et al.)는 대기업중심의 시장구조는 수출집중도에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김봉한·오근엽(2008)은 국가의 대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집중도가 상승하는 패턴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79] 또한 국가별 사례연구에서도 수출

75) Kemp et al. (2003), p. 135.

76) William G. Shepherd,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New York: Prentice-Hall, 2003).

77) 데이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Maddalena Conte, Pierre Cotterlaz, and Thierry Mayer, "The CEPII gravity database," http://www.cepii.fr/CEPII (검색일: 2024년 3월 20일).

78) 데이터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는 https://databank.worldbank.org/metadataglossary를 참조하시오.

집중도에 대한 원인으로서 시장에서의 대기업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며, 경험적으로 수출집중도와 대기업의 비중과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80] 가령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수출집중도와 대기업 비중의 상관관계는 수출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상관계수가 0.4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81]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대기업 비중과 수출집중도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수출집중도를 대기업집중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가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분석에서 대리변수가 지니는 한계가 있음에도 가설에 대한 보조적 분석으로 수출집중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변수의 측정은 세계통합무역솔루션(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서 제공하는 HHI 지수를 사용하였다. 지수는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7개 국가의 HHI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무역협정이 체결된 연도를 기준으로 각 체결국의 HHI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종속변수가 국가 수준이 아닌 FTA 수준이기에 독립변수는 체결국들의 HHI 지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82] 변수의 값이 클수록 수출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83]

---

79) 김봉한·오근엽, "수출집중도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8), p. 43; Robert C. Feenstra, T. H. Yang, and Gary Hamilton, "Business groups and product variety in trade: evidence from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8, No. 1 (1999), pp. 71-100.

80) 김일광,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 및 국가별 집중도 분석과 다변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9권 제6호 (2019); 김치열·박광서, "한국 수출품목 집중도 분석에 관한 연구: 허핀달지수, 상위기업 집중도, 샤프비율 및 밸류 앳 리스크 적용," 『국제상학』 제33권 제3호 (2018); Archanun Kohpaiboon and Eric D. Ramstetter, "Producer concentration, conglomerates, foreign ownership, and import protection: Thai manufacturing firms a decade after the crisis," *AGI Working Paper Series*, 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 (March 2008), pp.1-51, https://www.agi.or.jp/publications-en/workingpaper/2008/WP2008-05.html (검색일: 2024년 1월 24일); Janet M. Tanski and Dan W. French, "Capital concentration and market power in Mexico's manufacturing industry: has trade liberalization made a difference?"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5, No. 3 (2001), pp. 675-711.

81) 김봉한·오근엽 (2008), p. 44.

82) 모든 독립변수를 FTA 체결국의 평균값으로 사용한 이유는 FTA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고, 본 논문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작동되는 국제정치적 요인들, 가령 체결국 간의 권력관계 및 협상 당시의 배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83) 리비아와 모로코의 부분 무역 협정은 1998년 체결되었으나, 리비아의 자료가 없어 2017년의 HHI 지수를 활용하였다. 모로코와 이라크의 부분 무역 협정은 1982년 체결되었으나 자료가 없어 2014년의 HHI 지수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대기업 집중도 이외에 종속변수인 원산지규정 엄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의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무역량과 원산지규정 엄격성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84] 따라서 국가 간 무역량을 통제하기 위해 FTA 체결국 양자 간 무역량을 통제하였다. 데이터는 유엔(UN: United Nations)의 Comtrade의 자료로서 US$1,000 단위로 측정하였다.[85] 둘째,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수준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FDI의 수준을 통제하였다. 분석에서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의 유입(inflow)와 유출(outflow)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는 무역협정이 체결된 연도의 값이며 출처는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베이스이다.[86] 넷째, 협정 체결국의 시장규모와 개발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총인구(population)와 국내총생산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87] 다섯째,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협정의 체결국이 같은 국가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있는 경우 유사한 정치·경제적 규범을 가질 가능성 크고 이는 원산지규정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되었고 분석에서는 이를 통제하였다.[88] 마지막으로 각 국가가 WTO 회원국인지를 가변수로 통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연도의 값으로 측정되었다.

---

84) Kaleb Abreha and Raymond Robertson, "Heterogeneous trade agreements and adverse implications of restrictive rules of origin: Evidence from apparel trade," *The World Economy,* Vol. 46, No.12 (2023), pp. 3482-3510.

85) United Nations,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plus.un.org (검색일: 2024년 1월 9일).

86)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4년 1월 9일).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오스트리아와 캐나다의 1960년 협정의 경우 1970년의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1995년의 값을 사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1970년 값을, 세르비아의 경우는 2007년 값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요르단의 경우 1962년 데이터의 한계로 1972년의 값을, 이라크의 경우 2005년의 값을 사용하였다.

87) 데이터는 CEPII Gravitity Database를 활용하였다.

88) Anson et al. (2005), pp. 501-517.

<표 2> 변수 요약 (summary statistics)

변수명	Mean	St. Dev.	Min	Max
무역량(log) (A국가)	13.130	2.489	6.035	18.424
무역량(log) (B국가)	13.284	2.424	7.031	18.316
GDP(log) (A국가)	19.482	2.224	15.230	23.506
GDP(log) (B국가)	19.509	1.772	15.411	23.543
인구(log) (A국가)	10.253	1.958	6.430	14.154
인구(log) (B국가)	10.212	1.523	5.802	14.137
WITS HHI 지수 (평균)	0.123	0.097	0.044	0.440
진입 비용 (A국가)	2.108	0.465	2	6
진입 비용 (B국가)	2.216	0.591	2	6
엄격성 지수	0.265	0.443	0	1

출처: 저자 작성

2.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수행했다.[89] 〈표 3〉은 국내시장의 대기업집중도의 대리변수로서 시장진입비용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이다. 분석에서는 FTA가 두 국가 간의 협상의 결과이기에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더 클 때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를 단순히 국가별 지수의 평균값이 아닌 각 국가의 변수를 교차항으로 포함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분석에는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동일국에 의한 식민경험 여부, 인구, 국내총생산, 무역협정유형, WTO 회원국 여부를 통제하였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추정된 가설에 부합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국가별 시장진입비용 변수들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회귀계수

89) 종속변수를 서열변수로 사용하여 다항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의 결과가 이항변수(binary variable)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없기에 해석의 용이함과 시각화를 고려하여 이항변수를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분석에서 사용된 원자료는 엄격성 지숫값이 0.25 미만이면 낮은 수준의 엄격성, 0.25에서 0.5 사이면 중간 수준의 엄격성, 0.5 초과면 높은 수준의 엄격성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임의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범주형 데이터이다. 본 분석에서는 각 범주에 지정된 값 간의 거리가 불균등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항변수로 치환하여 분석하였다.

를 사용하여 승산비(odds ratio)를 계산하면, A 국가의 시장진입비용과 B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모두 1 표준편차 상승하면 원산지규정이 높을 확률이 약 7.24배 증가한다. 다만 한 국가의 시장진입비용 변수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A의 진입 비용이 1 표준편차 상승하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을 확률이 약 0.001배 감소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결과이고, FTA는 두 국가 간의 협상 결과라는 점에서 〈표 3〉의 결과 또한 본 논문이 추정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시장진입비용

	원산지규정 엄격성
협정 체결국들의 시장진입비용 교차항 (interaction variable)	1.981(0.868)**
시장진입비용 A국	-6.782(2.523)**
시장진입비용 B국	-3.906(1.899)**
FDI 유입(log) A국	-0.007(0.088)
FDI 유입(log) B국	-0.139(0.088)
FDI 유출(log) A국	0.190(0.130)
FDI 유출(log) B국	0.158(0.123)
동일국에 의한 식민경험 여부	0.282(0.957)
Observations	102
Log Likelihood	-69.321

Note: 무역량, 인구, 국내총생산, WTO 회원국 변수들 또한 포함되었다. *p〈0.1;**p〈0.05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은 〈표 3〉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은 A 국가와 B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미치는 한계 효과를 보여주는 예측값 그래프이다. x축은 A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을, y축은 B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낸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낮은 경우 시장진입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A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증가할수록 B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

으로, 가령 A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최고치일 때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낮을 확률이 0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을 경우 시장진입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A 국가의 진입비용이 증가할수록 B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높이는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두 국가의 시장진입비용이 보완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진입 비용이 원산지규정 엄격성에 미치는 영향 예측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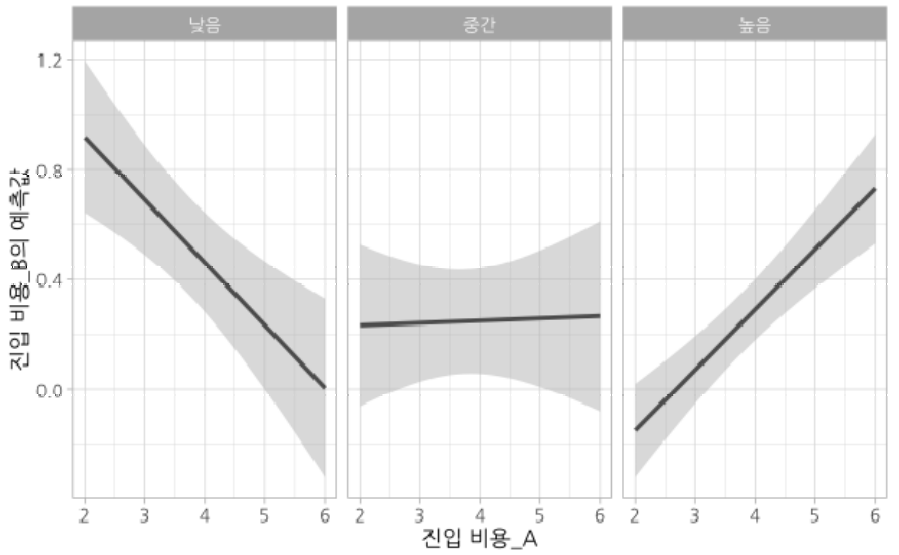

출처: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는 독립변수의 추가적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가설을 살펴보았다. 국가별 대기업집중도 데이터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별 수출집중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독립변수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는 추정된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FTA 체결국의 수출 HHI 지수의 평균이 1 표준편차 상승하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을 확률이 3.3 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표 4> 원산지규정 엄격성과 대기업 집중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대기업 집중도 (수출 HHI 지수)	0.852 (0.474)*
인구(log) A국	-0.096 (0.043)**
인구(log) B국	0.082 (0.048)*
무역량(log) A국	0.039 (0.069)
무역량(log) B국	-0.055 (0.075)
FDI 유입(log) A국	-0.001 (0.014)
FDI 유입(log) B국	0.008 (0.013)
FDI 유출(log) A국	-0.005 (0.021)
FDI 유출(log) B국	-0.008 (0.013)
동일국에 의한 식민경험 여부	-0.169 (0.149)
상수(constant)	-1.128 (0.854)
N	102
Log Likelihood	-39.653
Akaike Inf. Crit.	113.305

Note: 분석에는 국내총생산, WTO 회원국 변수들 또한 통제하였다. *p<0.1;**p<0.05.
출처: 저자 작성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수준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하는 국내적인 분배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FTA 협정 당사국 시장의 성격, 특히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진 국가간의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국가별 대기업집중도에 관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시장진입비용과 수출집중도(수출 HHI)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FTA의 원산지규정이 엄격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 무역을 확대하지만 동시에 자국 기업에 차

별적인 보호주의적 혜택을 제공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FTA의 원산지규정은 제3국 기업의 우회무역을 차단하여 FTA의 혜택을 자국 기업에만 부여하고자 하는 비관세장벽으로 FTA의 핵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FTA의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국 기업은 한정적이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준수비용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 수출 규모가 크기에 행정비용에 대한 한계비용이 적은 기업에는 부담이 아니지만, 수출 규모가 적고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FTA는 혜택이자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중소기업에게 원산지규정은 단순한 고정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가 모든 자국 기업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달리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엄격성으로 인하여 그 혜택은 일부의 국내기업에만 제공되고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 무역장벽이 비관세장벽이라는 사실은 작금의 세계무역규범이 중소기업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90] 불투명하고 절차적으로 복잡한 현지조달요건(local contents requirements) 및 원산지규정과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세계시장으로 접근은 대기업에 비해 수월하지 않다.[91] 비관세장벽은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대기업에 비해 정책적·정치적 영향력도 작은 중소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92]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 세계 기업의 9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52%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현실은 원산지규정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금(wages)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90)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91)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p. 22.
92) The World Bank (2023).

[참고문헌]

권미옥·나희랑.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6).

김봉한·오근엽. “수출집중도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김영춘·성남길·김정숙.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

김일광.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 및 국가별 집중도 분석과 다변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9권 제6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9).

김치열·박광서. “한국 수출품옥 집중도 분석에 관한 연구: 허핀달지수, 상위기업집중도, 샤프비율 및 밸류 앳 리스크 적용.” 『국제상학』 제3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8).

장지상·이근기.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국제지역학회, 2009).

조미진.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8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조정란.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6).

한병영. “시장진입장벽의 발생원인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2).

Abreha, Kaleb, and Raymond Robertson. “Heterogeneous trade agreements and adverse implications of restrictive rules of origin: Evidence from apparel trade.” *The World Economy,* Vol. 46, No. 12 (2023).

Ahn, Choong Yong, Richard E. Baldwin, and Inkyo Cheong.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Heidelberg: Springer, 2005).

Anson, José,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Jaime de Melo,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3, No. 3 (2005).

Bagwell, Kyle W., and Petros C. Mavroidi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Bain, Joe S. *Barriers to New Competition: The Character and Consequenc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Bhagwati, Jagdish. *In Defense of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_____.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Buccirossi, Paolo (ed.). *Handbook of Antitrust Economics* (Cambridge: The MIT Press, 2008).

Cadot, Olivier,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Thierry Verdier (eds.).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Cadot, Olivier and Jaime de Melo. "Why OECD Countries Should Reform Rules of Origin."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23, No. 1 (2008).

Carrère, Céline, and Jaime de Melo.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stimates from NAFTA." In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Thierry Verdier (eds.).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Chase, Kerry A. "Protecting Free Trade: The Political Economy of Rules of Orig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2, No. 3 (2008).

De Benedictis, Luca, and Luca Salvatici (eds.). *The trade impact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policies: an analysis through gravity models* (Heidelberg: Springer, 2011).

Dinh, Duy, Dzmitry Kniahin, Mondher Mimounim, and Xavier Pichot. "Global landscape of rules of origin: Insights from the new comprehensive database." *2019 GTAP Conference Paper* (2019).

Duttagupta, Rupa, and Arvind Panagariya. "Free Trade Areas and Rules of Origin: Economics and Politics." *Economics & Politics*, Vol. 19, No. 2 (2007).

Estevadeordal, Antoni.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34, No. 1 (2000).

Falvey, Rod, and Geoff Reed.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34 (1998).

Feenstra, Robert, T. H. Yang, and Gary Hamilton. "Business groups and product variety in trade: evidence from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8, No. 1 (1999).

Grossman, Gene M., and Elhanan Helpman. "The Politics of Free 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4 (1995).

Hayakawa, Kazunobu. "Impact of Diagonal Cumulation Rule on FTA Utilization: Evidence from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between Japan and Thailand."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32 (2014).

Hayakawa, Kazunobu, Naoto Jinji, Toshiyuki Matsuura, and Taiyo Yoshimi. *Costs of Utiliz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Tokyo: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19).

Helpman, Elhanan, and Paul Krugman.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Cambridge: the MIT Press, 1985).

Herin, Jan. "Rules of Origin and Differences between Tariff Levels in EFTA and in the EC." *EFTA Occasional Paper*, No. 13 (1986).

Hoekman, Bernard M., and Ernesto Zedillo (eds.). *Trade in the 21st Century: Back to the Pas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9).

Hoekman, Bernard M., and Stefano Inama.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An Agenda for Plurilateral Cooperation?"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2, No. 1 (2018).

Inama, Stefano.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Jones, Vivian C., and Liana Wong. "International Trade: Rules of Origin."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L34524* (2020).

Kemp, Ron, Marco Mosselman, Jasper Blees, and Jeroen Maas. "Barriers to Entry." *EIM Business and Policy Research, Scales Research Reports,* (2003).

Kniahin, Dzmitry, and Jaime de Melo. "A Primer on Rules of Origin as Non-Tariff Barriers."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Vol. 15, No. 7 (2022).

Krishna, Kala, and Anne O. Krueger.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Alan V. Deardorff, James A. Levinsohn, and Robert 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Krueger, Anne O. *International Trade: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McGillivray, Fiona. *Privileging Industry: The Comparative Politics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anagariya, Arvind. "The Regionalism Debate: An Overview." *The World Economy*, Vol. 22, No. 4 (1999).

Park, Se-Hyun, and Myong-Sop Pak.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 Influence of the Rules of Origin on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and Trade Performance." *Journal of Korea Trade,* Vol. 25, No. 8 (2021).

Portugal-Perez, Alberto. "Assessing the Political Economy Factors on Trade Integration: Rules of Origin under NAFTA."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6, No. 2 (2011).

Schott, Jeffrey J. (ed.).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Shepherd, William G.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New York: Prentice-Hall, 2003).

Stigler, George J.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Takahashi, Katsuhide, and Shujiro Urata. "On the use of FTAs by Japanese firms: Further evidence." *Business and Politics*, Vol. 12, No. 1 (2010).

Tanski, Janet M., and Dan W. French. "Capital concentration and market power in Mexico's manufacturing industry: has trade liberalization made a difference?"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5, No. 3 (2001).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USITC).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Economic Impact and Operation* (Washington D.C.: USITC, 2023).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of 19 December*. WT/MIN (15)47 (2015).

_____. *World Trade Report 2016: Leveling the trading field for SM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16).

Yi, Jisoo. "Rules of origin and the use of free trade agreements: a literature review." *World Customs Journal*, Vol. 9, No.1 (2015).

〈인터넷 자료〉

Albert, Christoph, and Lars Nilsson. "To use, or not to use (trade preferences)

that is the question." European Trade Study Group (August 2016), https://www.etsg.org/ETSG2016/Papers/090.pdf (검색일: 2024년 1월 9일).

Amin, Mohammad, Filip Jolevski, and Asif M. Islam. "The Resilience of SMEs and Large Firms in the COVID-19 Pandemic: A Decomposition Analysi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The World Bank Group* (October 2023), https://elibrary.worldbank.org/doi/abs/10.1596/1813-9450-10562 (검색일: 2024년 1월 15일)

Conte, Maddalena, Pierre Cotterlaz, and Thierry Mayer. "The CEPII gravity database." http://www.cepii.fr/CEPII (검색일: 2024년 3월 20일).

Hufbauer, Gary and Ben Goodrich. "Free Trade Agreements: Lessons from NAFT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pril 2004.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2184454/free-trade-agreements-ch-2/2940431(검색일: 2024년 1월 9일).

Kawai, Masahiro and Ganeshan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ADBI) (April 2009), *https://www.adb.org/publications/* asian-noodle-bowl-it-serious-business (검색일: 2023년 12월 19일).

Kohpaiboon, Archanun, and Eric D. Ramstetter. "Producer concentration, conglomerates, foreign ownership, and import protection: Thai manufacturing firms a decade after the crisis." *AGI Working Paper Series*, 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 (March 2008), https://www.agi.or.jp/publications-en/workingpaper/2008/WP2008-05.html (검색일: 2024년 1월 24일).

Manchin, Miriam, and Annette O. Pelkmans-Balaoing. "Rules of Origin and the Web of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The World Bank Group (August 2007), https://elibrary.worldbank.org/ doi/abs/10.1596/1813-9450-4273 (검색일: 2024년 1월 18일).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4년 1월 9일).

United Nations.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plus.un.org (검색일: 2024년 1월 9일).

[ABSTRACT]

Large Firms vs SMEs: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Dong-Hun Kim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Sein Park | Junior Fellow, Institute of Political Research, Korea University

Why do Free Trade Agreements differ in the restrictiveness of their rules of origin?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rules of origin have domestic distributional implications which benefit large firms, we argue that FTAs between countries with markets dominated by large firms have stringent rules of origi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FTAs between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market concentration and high market entry costs tend to have stringent rules of origin.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SMEs,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투 고 일: 2024.04.02.
심 사 일: 2024.05.20.
게재확정일: 2024.05.30.